
보충 설명

| | |
|-----------------------------------|----|
| 1. 지급결제 프로세스 | 81 |
| 2. 한은금융망과 소액결제시스템 간 연계 | 83 |
| 3. 한국은행의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운영 현황 | 84 |
| 4.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감시 | 87 |
| 5.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운영 현황 | 89 |
| 6. ISO 산하 금융서비스 부문 기술위원회(TC68) 개요 | 9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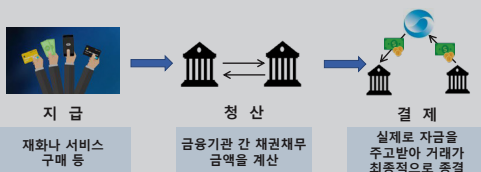
보충 설명 1.

지급결제 프로세스

지급결제는 경제주체들이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 금융거래 등 각종 경제활동을 실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채무관계를 지급수단을 이용해 종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급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지급수단은 현금(화폐)이다. 현금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지급수단으로서 그 공신력을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거래에서나 현금을 지급하면 청산, 결제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지급결제가 마무리된다.

그러나 현금을 제외한 어음이나 수표,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의 지급수단은 지급인이 자신의 거래은행에 맡겨 놓은 돈을 수취인에게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수단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급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지급인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서 인출해 수취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해 주는 등의 금융기관 간 자금이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처럼 현금을 지급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지급결제가 마무리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 청산 및 결제의 세 단계를 거쳐 지급결제가 마무리된다.

지급-청산-결제 프로세스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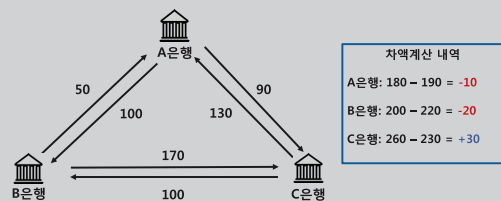
(지급)

지급은 지급인이 자신의 지급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수취인 앞으로 자금이체를 의뢰하는 지급지시를 송부하고 수취인이 그것을 수신하는 과정으로서 지급결제의 시작 단계이다. 지급은 개인이나 기업 등 경제주체가 서로 주고받을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할 목적으로 어음, 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직접 주거나 지급카드를 통해 지급을 의뢰하고 또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예금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청산)

청산은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지급이 이루어졌을 때 금융기관들이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청산기관이 거래당사자 간에 개입해 결제를 위해 송부된 어음, 수표, 계좌이체 등의 지급수단을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수취하거나 지급해야 할 차액을 산출하게 된다. 거래 이후 지급수단의 수령, 조회, 통지 및 차액계산이나 결제전의 포지션 산출과정 모두가 청산에 해당된다. 현금의 경우 별도 청산 절차 없이 지급과 동시에 결제가 완료되나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의 경우 청산 절차가 필요하다.

청산 과정(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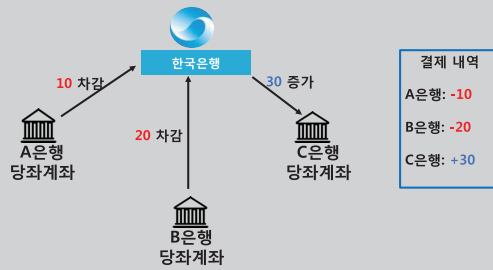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결제)

결제는 청산과정을 통해 계산된 금액을 각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에 개설한 당좌예금계좌 간 자금이체 등을 통해 서로 주고받아 최종적으로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하는 과정이다.

한은금융망을 통한 최종 결제(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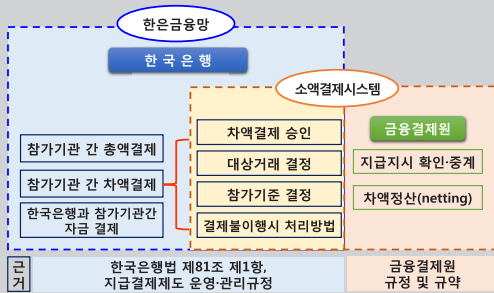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보충 설명 2.

한은금융망과 소액결제시스템 간 연계

한국은행은 소액결제시스템을 「한국은행법」 제81조 및 이에 근거한 금융통화위원회 규정에 따라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해왔다. 「한국은행법」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한국은행이 수행하는 지급결제업무의 목적이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하는 동시에 한은금융망을 통해 최종결제가 이루어지거나 한은금융망과 연계되어 작동하는 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관련되는 사항을 직접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은금융망과 소액결제시스템 연계



자료: 한국은행

이에 한국은행은 소액결제시스템과 관련해 차액결제 승인 및 대상거래 결정, 참가기준 결정, 결제불이행 시 처리방법 등의 결제리스크 관리장치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차액결제 승인 및 대상거래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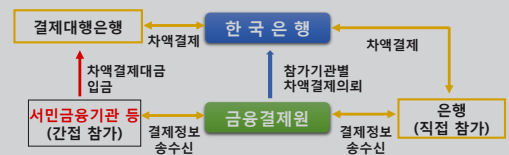
한국은행은 소액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평가하여 최종 결제(차액결제)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에 개설된 은행 당좌예금계좌를 통해 처리되는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 간 차액결제 대상거래도 결정하고 있다.

(참가기준 결정)

한국은행은 지급준비금 예치 의무, 한국은행의 긴급유동성 지원대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액결제시스템의 참가방식을 직접 및 간접 참가로 구분·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접참가기관인 은행은 한국은행 당좌예금계좌를 통해 차액결제를 직접 수행하는 반면 금융투자회사, 서민금융기관 등은 은행이 차액결제를 대행하고 있다.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방식



자료: 한국은행

(결제불이행 시 처리방법)

한국은행은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에 대비해 참가기관별 순이체한도 설정, 사전 납입한 담보를 근거로 한 유동성 지원 등 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먼저 참가기관이 자율적으로 해당 기관의 차액결제 채무액의 상한(순이체한도)을 미리 설정하고, 동 한도 내에서만 자금이체가 가능토록 제한하고 있다. 또한 참가기관이 순이체한도 대비 일정비율 이상의 우량채권을 한국은행에 사전 담보로 납입하도록 하고 있다. 참가기관의 차액결제 불이행 시 사전납입된 담보를 한국은행 대출담보로 사용하거나 시장에 매각 또는 한국은행이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액결제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보충 설명 3.

한국은행의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운영 현황

(차액결제와 결제리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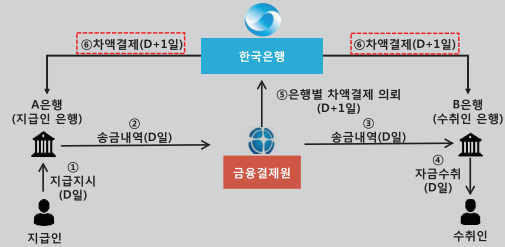
차액결제는 일정기간중 일어난 은행 간 자금이체에 따른 채권·채무를 상계해 차액만을 지정시점에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차액결제 방식에서는 거래일 영업 마감 후 또는 다음 영업일 등 지정시점에 은행 간 거래차액이 중앙은행의 당좌예금계좌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제될 때까지 은행이 결제를 불이행할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특히 고객에게 자금을 먼저 지급한 은행은 자금 지급시점부터 차액결제 종료시점까지 실질적으로 상대방 은행에게 신용 대출을 제공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신용리스크에 노출된다.

또한 은행이 일시적인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 지정시점에 차액결제자금을 지급하지 못해 결제를 지연시키는 경우 상대방 은행의 자금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유동성리스크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차액결제 방식은 자금거래를 건별로 실시간 결제처리하는 총액결제 방식과 달리 신용리스크는 물론 시스템적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지급결제시스템과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리스크 관리 수단이 필요하다.

차액결제 프로세스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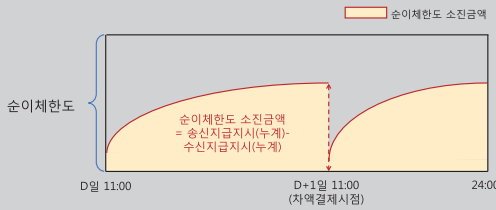
(순이체한도 제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자금융공동망, 오픈뱅킹 공동망 등 우리나라의 소액결제시스템은 지급인의 지급지시 즉시 수취인의 계좌에 자금이 입금(인출 가능, 선지급)되는 반면 은행 간 결제는 다음 영업일 지정시점(11:00)에 완료되는 이연차액결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수취인의 거래 은행은 동 지정시점까지 수취인에게 지급한 자금을 지급인의 거래은행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하는 신용리스크에 노출된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신용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해 은행 간의 순이체한도(순채무한도)를 미리 설정하고 동 한도 내에서만 자금이체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참가기관이 다른 참가기관에 고객자금이체를 신청하는 지급지시를 전송하면 동 금액만큼 순이체한도가 차감되며 다른 참가기관으로부터 고객자금이체 지급지시를 수신한 금액만큼 동 한도가 복구된다. 참가기관은 다음 영업일 송신 지급지시 금액에서 수신지급지시 금액만큼을 상계한 순채무금액을 다음 영업일 11:00시에 최종결제한다. 순이체한도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동 한도의 소진율이 100%에 이르면 해당기관의 자금이체가 중지된다. 은행은 순이체한도관

리시스템에 접속해 한도 소진상황을 수시로 조회함으로써 일중 미결제된 순이체액을 자기책임하에 관리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순이체한도 소진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

차액결제 순이체한도 제도



자료: 한국은행

(사전담보 제공)

한국은행은 은행으로 하여금 순이체한도와 연동해 일정 규모의 우량채권을 사전에 담보로 납입하도록 하고 있다. 익일(D+1) 차액결제시점(11:00시)에 특정 은행의 자금 부족으로 결제불이행 사태가 발생하면 사전에 제공한 담보를 처분하거나 이를 담보로 한국은행 대출을 통해 자금을 지원해 결제가 이행되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담보로 납입할 수 있는 증권은 중앙은행의 대출제도 및 유동성 문제 등을 고려해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¹⁾

현재 사전담보 납입비율은 순이체한도 규모의 70%로 설정되어 있다. 한국은행은 지급결제 부문의 국제기준(PFMI)을 준수하기 위해 동 비율을 100%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

경우에는 순이체한도가 100% 소진된 상황에서 은행의 결제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은행이 기납부한 담보를 처분해 결제를 이행할 수 있어 신용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손실공동분담)

차액결제 시점에 은행의 결제불이행이 발생해 한국은행이 사전 납입된 담보를 처분하거나 이를 담보로 한 대출을 통해 자금을 제공했음에도 결제자금 부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다른 은행들이 이를 공동분담함으로써 차액결제를 완료하게 된다.

결제 부족자금의 은행별 분담금은 차액결제시점이 같은 거래의 결제이행을 위해 제공해야 할 사전 담보납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향후 한국은행이 국제기준에 따라 담보제공비율을 100%로 인상(2025.8월 예정)하게 될 경우 손실공동분담 제도는 그 필요성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차액결제 대행제도)

우리나라는 서민금융기관(2004년) 및 금융투자회사(2009년)에게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허용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차액결제 대행제도를 신설했다.

지급준비금 예치의무가 없고 한국은행의 당좌예금 계좌에 충분한 결제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서민금융기관 및 금융투자회사는 차액결제시점에 유동성리스크 및 신용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다른 참가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들 기

1) 현재는 2022년 10월 시행한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시장 안정화조치'의 일환으로 2023년 7월까지 기존 채권 외에 한시적으로 은행채 및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을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대상증권에 포함하고 있다.

관에 대해서는 차액결제를 다른 차액결제 참가기관이 대신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차액결제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은 차액결제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국은행에 지급준비금 예치 의무가 있는 기관으로서 BIS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성비율이 감독기관이 정한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는 은행으로 한정된다.

차액결제 대행은행은 차액결제위탁기관의 차액결제를 대행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에 따라 자신의 순채무액뿐 아니라 차액결제위탁기관의 순채무액을 합산한 금액을 결제할 책임이 있다. 위탁기관은 대행한도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담보를 대행은행에 제공하고 있다. 대행은행의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영업정지, 파산 등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차액결제 대행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위탁기관이 직접 자신의 한국은행 당좌예금계좌를 통해 차액결제를 실시할 수도 있다.

보충 설명 4.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감시

지급결제제도 감시(oversight)란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모니터링 및 정기·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시스템의 개선을 유도하는 중앙은행의 책무를 의미한다.¹⁾

중앙은행이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활동을 수행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액·증권·외환 결제시스템 등은 대부분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거액결제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어, 이들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은 중앙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거액결제시스템의 안전성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중추를 이루는 거액결제시스템을 직접 운영하고, 이와 연계된 소액·증권·외환 결제시스템의 결제업무를 일상적으로 처리·분석하면서 감시에 필요한 전문성을 축적해 왔으며, 특정 지급결제시스템에서의 위기 징후(결제지연 또는 결제불이행 등)를 어느 기관보다 빠르게 포착할 수 있다.

셋째, 지급결제제도는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기반이 된다. 즉, 통화정책의 효과는 시장에서의 금융거래와 지급결제시스템 및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결제기능을 통해 경제 전체에 파급된다.

넷째, 중앙은행은 화폐의 독점적 발행과 무제한 공급능력을 기초로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금융기관 또는 금융시장에 소요자금을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일시적 또는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유동성 리스크가 금융 시스템 전체로 파급되지 않도록 하는 최종대부자 기능을 수행한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81조 및 그 하위 규정 에 따라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효율적인 감시를 위해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을 결제규모, 파급영향 등에 따라 중요지급결제시스템과 기타지급결제시스템으로 구분하고 있다.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은 해당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할 경우 그 충격이 국내외 금융 시스템에 파급되어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지급결제시스템을 말한다. 한국은행은 2022년 말 기준으로 한은금융망을 포함해 10개 지급결제시스템을 중요지급결제시스템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결제규모 등을 감안해 22개 지급결제시스템을 감시대상 기타지급결제시스템으로 분류하고 있다.

1) "Oversight of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is a central bank function whereby the objectives of safety and efficiency are promoted by monitoring existing and planned systems, assessing them against these objectives and, where necessary, inducing change."(BIS CPMI, Central Bank Oversight of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2005.5월)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

| | | 구분 | 운영기관 | |
|---------------------|---|----------------|------|-----------|
| 중요 지급결제 시스템 (10개) | 한은금융망 | 한국은행 | | |
| | 어음교환시스템 | 금융결제원 | | |
| | 금융공동망 | | | 타행환 |
| | | | | 전자금융 |
| | 채권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 | 한국예탁결제원 | | |
| | 기관간Repo결제시스템 |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 | |
| | 유가증권시장결제시스템 | | | |
| | 코스닥시장결제시스템 | 한국거래소 | | |
| 파생상품시장결제시스템 | CLS은행 | | | |
| 기타 지급결제 시스템 (22개) | 지로시스템 | 금융결제원 | | |
| | 금융공동망 | | | CD |
| | | | | 자금관리서비스 |
| | | | | B2C 전자상거래 |
| | | | | B2B 전자상거래 |
| | | | | 직불카드 |
| | | | | 지방은행 |
| | | | | 국가 간 공동망 |
| | 오픈뱅킹 | | | |
| | BC카드결제시스템 | BC카드사 | | |
| 외화자금이체시스템 |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 | | |
| 서민금융기관 중앙조직 지급결제시스템 |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탁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 | | |
| 주식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 | 한국예탁결제원 | | | |
| 위안화 청산시스템 | 교통은행 서울지점 | | | |

주: 1) 외국 중앙은행들과 협조적 감시업무를 수행
자료: 한국은행

한국은행의 감시업무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에 대한 평가, 그에 따른 개선유도 등으로 이루어진다. 모니터링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것이다. 정기 모니터링은 일, 월, 분기 단위로 지급결제시스템의 양적 정보, 리스크 정보 등을 점검하는 것이다.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의 전산 시스템 장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한국은행은 수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필요시 참가기관에 대해 일시적 참가제한 조치,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중요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 2년마다 정기적으로, 그리고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지급결제시스템을 평가할 때 적용하는 기준은 PFMI이다. 한국은행이 동 원칙을 평가기준으로 채택한 것은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 및 이해 관계자가 국내에 한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가 내용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PFMI는 리스크 통제를 위해 FMI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24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각 원칙은 FMI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한편, 지급결제시스템 평가결과가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안전성 및 효율성에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은 그 운영기관이나 감독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이란 다양한 결제리스크가 적절히 관리되어 시스템이 안전하게 운영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효율성은 지급결제시스템 운영 및 참가에 소요되는 비용이 최소화된 상태를 지칭한다.²⁾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안전성과 효율성은 본질적으로 상충관계에 있다.

2)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 '1.0 Introduction'의 'Public policy objectives : safety and efficiency'(\$15~\$18)을 참조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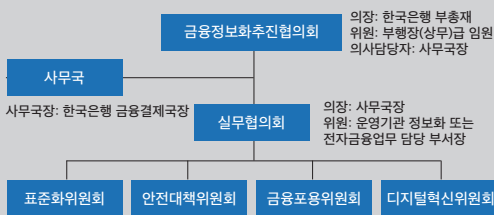
보충 설명 5.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운영 현황

개요 및 구성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지능정보화기본법」 제17조에 의거해 금융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한국은행과 금융회사들의 협의체이다. 1984년 9월 금융권 국가기간전산망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된 금융전산위원회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1996년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를 거쳐 2009년 8월 자율적 민간협의체인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로 개편되었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의장인 한국은행 부총재를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국과 실무협의회를 두고, 실무협의회 산하에 4개(표준화위원회, 안전대책위원회, 금융포용위원회, 디지털혁신위원회)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2022년 말 현재 한국은행, 은행(18), 비은행 금융기관(7), 금융유관기관(6)이 참여 중이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조직도



자료: 한국은행

금융정보화추진협의의 참가기관(2022년 말 현재)

| 구분 | 참가기관명 |
|----------|---|
| 은행 |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농협, 수협, 기업, SC제일, 산업, 씨티, 부산, 대구, 경남, 광주, 전북, 제주,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
| 비은행 금융기관 |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KB손해보험, BC카드, 하나카드, 새마을금고중앙회, 우정사업본부 |
| 금융유관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금융결제원, 코스콤, 보험개발원, 금융보안원 |

자료: 한국은행

주요 업무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그동안 금융정보화 사업 추진을 통해 금융 부문에 최신 정보기술을 접목하며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촉진했다. 금융권 공동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련 대책과 표준을 마련해왔으며 최근에는 디지털 금융의 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 취약계층이나 소외지역을 포용하기 위한 금융권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 주요 금융정보화 사업

| 사업명 | 시기 |
|---------------------------|------|
| 현금자동인출기(CD/ATM) 공동망 구축 | 1988 |
| ARS공동망 구축 | 1989 |
| 타행환공동망 구축 | 1989 |
| 직불카드공동망 구축 | 1996 |
| 자금관리서비스(CMS)공동망 구축 | 1996 |
| 신용정보 공동이용망 구축 | 1997 |
| 전자화폐(K-Cash) 공동망 구축 | 2001 |
| 전자금융공동망 구축(ARS공동망의 확대 개편) | 2001 |
| 기업 간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 2002 |
| CLS외환동시결제시스템 구축 | 2004 |
| 전자어음 관리시스템 구축 | 2005 |
|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뱅킹시스템 공동 구축 | 2010 |
| 국가 간 ATM망 공동이용시스템 구축 | 2010 |
| 현금IC카드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 2012 |
| 모바일현금카드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 2019 |
| 금융권 ATM DB 및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 2021 |

자료: 한국은행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 주요 금융 표준 제정 목록

| 금융 표준 목록 | 시기 |
|--------------------------------------|------|
| 금융전산업무 표준 제정 | 1995 |
| 핀뱅킹 서비스 파일 포맷 표준 제정 | 1996 |
| 금융IC카드 폐쇄형 표준 제정 | 1997 |
| 금융IC카드 개방형 표준 제정 | 2003 |
| 금융IC카드 보안토큰(공인인증서기반 거래용) 규격 표준 제정 | 2007 |
| USIM 등 모바일칩 기반의 RF방식 CD/ATM 이용 표준 제정 | 2008 |
| 금융IC카드(개방형/폐쇄형 통합) 표준 제정 | 2009 |
| 장애인을 위한 CD/ATM 표준 제정 | 2010 |
| 금융microSD 표준 제정 | 2012 |
|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표준 제정 | 2016 |
| 모바일 지급수단(QR코드) 표준 제정 | 2019 |
| 모바일 현금카드(HCE방식) 표준 제정 | 2019 |
| 분산ID 서비스 운용 및 공유체계 표준 제정 | 2021 |

자료: 한국은행

보충 설명 6.

ISO 산하 금융서비스 부문 기술위원회(TC68)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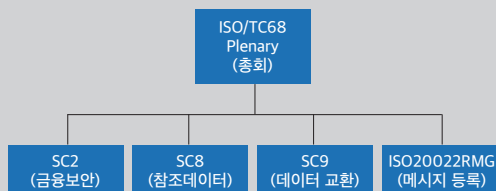
ISO/TC68은 ISO 산하 기술위원회(TC, Technical Committee) 중 68번째로 설립된 기술위원회로서 금융서비스 분야 국제표준의 제·개정을 담당¹⁾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KATS)은 ISO/TC68의 금융서비스 부문 국제표준 관련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산하에 국내 전문위원회(위원장: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간사기관: 한국은행)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ISO/TC68 위원회 체계 및 참여국

ISO/TC68은 효율적인 표준업무 추진을 위해 산하에 금융보안(Security), 참조데이터(Reference Data), 데이터 교환(Information Exchange)을 담당하는 3개의 분과위원회와 ISO 20022 관리를 담당하는 등록관리그룹(RMG)²⁾을 두고 있다.

ISO/TC68 위원회 체계



자료: 한국은행

ISO/TC68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표준의 제·개정 심의에 대한 투표권이 있는 34개 정회원국과 투표권이 없는 50개 옵저버국이 참여 중이다.

ISO/TC68 정회원 국가

정회원 34개국

한국, 미국, 영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프랑스, 바레인, 벨기에,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중국, 콩고, 덴마크, 독일, 헝가리, 인도,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폴란드, 러시아,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 스웨덴, 스위스, 태국, 튀니지, 터키, 우간다, 말라위

자료: 한국은행

ISO/TC68 활동 및 국내 전문위원회 대응

ISO/TC68은 산하 분과위원회 활동을 통해 디지털 혁신 등에 따라 진화하는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각 분과 위원회에서는 담당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표준화 수요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한 후 표준(안)을 개발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이나 진행 경과를 ISO/TC68 참여국 및 타 분과위원회와 공유하기 위해 매년 연차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국내 전문위원회 간사기관인 한국은행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와 함께 국내 표준의 국제화 추진, 국제표준의 국내 적용 필요성 등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한국 대표 자격으로 연차총회에 참석해 국제표준의 동향을 살피고 국제표준 전반에 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한편 2023년 연차총회는 5월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1) 2023년 1월 기준 55개의 금융서비스 관련 표준이 등록되어 있으며, 19개 표준의 제·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2) 등록관리그룹(RMG)은 ISO 20022 전문의 중복개발 방지를 위해 전문의 승인 및 등록 과정을 총괄하고 있다.